

국회에서 의결된 형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.

대 통 령 문 재 인 인

2020년 10월 20일

국 무 총 리 정 세 군

국 무 위 원

추 미 애

법무부장관

●법률 제17511호

형법 일부개정법률

법률 제12575호 형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부칙 제2조제1항 중 “공소가 제기되는 경우부터”를 “저지른 범죄부터”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◇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형법불소급원칙에 따라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을 받은 노역장유치 관련 기존 부칙을 정비함으로써 개정 법률의 적용례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. <법제처 제공>